



제278회(임시회) 제4차 본회의
2009년 3월 27일 (금)

심사보고서

-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
교육사회위원회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2009. 3. 27.

교육사회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3월 9일

충청북도교육감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3월 1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2009. 3. 23 제278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

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 · 토론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이장길 기획관리국장)

가. 제안이유

○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
시 ·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조정 배정됨에 따라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,
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는
한편,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
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,301명에서 152명
이) 감원된 2,879명으로 함.(안 제2조)
- 초과 현원은 해소 시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(안 부칙 제2조)
- 『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』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조문 변경

III. 검토보고 요지

(교육사회전문위원 윤양한)

- 본 조례안은
 - 2008. 12. 29.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시·도교육청에 통보된 『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 세부 시행 계획』에 의거 시·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을 5% 감축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,
 -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령인구 감소,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·사회적 상황변화, 정부 감세정책 등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 및 제22조에 의거 2008년 정원 대비 표준정원은 152명, 보정정원은 156명을 각각 감축하였음.

《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조정 배정 현황》

- 표준정원 : 2,879명(2008년 표준정원 대비 5% 감축)
- 보정정원¹⁾ : 2,965명(표준정원 ×1.03)
-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규모

(단위:명)

표 준 정 원		보 정 정 원		비고	
2008년	2009년	감축정원	2008년	2009년	감축정원
3,031	2,879	152	3,121	2,965	156

- 또한, 정원 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에 대하여는 초과 현원의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안 부칙 제2조에 명시하였으며,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음.

- 따라서, 동 조례안의 개정은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조정 및 효율적 배치,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청 운영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라 일괄적으로 감축·조정된 표준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* 별 첨 : 시·도 교육청 정원책정 현황

1)보정정원 : 급격한 행정수요 발생에 신축적 대응 등 시·도교육청의 자율성 부여를 목적으로 표준정원의 3%를 더한 정원으로, 사용 시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과 정원 조례 개정 후 사용해야 하며, 국고에서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는 정원임

《별첨》

시·도교육청 정원책정 현황

시도 교육청	표준정원		보정정원		증 감	
	2008년	2009년	2008년	2009년	표준정원	보정정원
서울	7,154	6,796	7,368	6,999	△358	△369
부산	3,679	3,495	3,789	3,599	△184	△190
대구	2,558	2,430	2,634	2,502	△128	△132
인천	3,138	2,981	3,232	3,070	△157	△162
광주	1,622	1,540	1,670	1,586	△82	△84
대전	1,797	1,707	1,850	1,758	△90	△92
울산	1,596	1,516	1,643	1,561	△80	△82
경기	12,569	11,940	12,946	12,298	△629	△648
강원	3,780	3,591	3,893	3,698	△189	△195
충북	3,031	2,879	3,121	2,965	△152	△156
충남	4,069	3,865	4,191	3,980	△204	△211
전북	3,983	3,783	4,102	3,896	△200	△206
전남	4,853	4,610	4,998	4,748	△243	△250
경북	5,139	4,882	5,293	5,028	△257	△265
경남	5,374	5,105	5,535	5,258	△269	△277
제주	1,135	1,078	1,169	1,110	△57	△59
합계	65,477	62,198	67,434	64,056	△3,279	△3,378

IV. 질의 및 답변요지：“생략”

V. 토론요지：“생략”

VI. 심사결과：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요지：없음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：없음

IX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1조 중 "제35조"를 "제33조"로, "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3조, 제17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, 제17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"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도교육청에"를 "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"로, "3,031명"을 "2,879명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"3,018명"을 "2,866명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 원에 대하여는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3조, 제17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원의 총수) <u>도교육청에</u>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,031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: 3,018명 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33조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, 제17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. 제2조(정원의 총수) <u>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</u> ----- 2,879명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2,866명</p>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(개정 2008.2.29 법률 제8852호)

- 제33조 (공무원의 배치)** ①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·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- ②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」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(개정 2008.2.29 대통령령 제20740호)

- 제14조 (표준정원의 책정)** ① 교육감은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(이하 "표준정원"이라 한다)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8.2.29>

- ② 교육감은 교육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또는 7월에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- ④ 지방자치단체의 폐지·분합, 경계변경 또는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·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·도교육청의 표

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수·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 등이 유사한 다른 시·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참작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에 의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
[본조신설 2004.1.29]

제19조 (정원의 규정) ①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4.1.29>

1.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
 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
- ②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(개정 2008.3.4 교육인적자원부령 제 1호)

제3조 (표준정원의 산정<개정 2004.1.30>)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·도교육청별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04.1.30>

②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·직급별·직렬별로 정원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1.31, 2008.3.4>

③영 제14조제2항에서 "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"이라 함은 표준정원에 보정비율 1.03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(이하 "보정정원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<신설 2004.1.30, 2008.3.4>

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매 2년마다 8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한다. <신설 2004.1.30, 2008.3.4>

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. <신설 2004.1.30>

[별표 1] <개정 2004.1.30>

시·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산식(제3조제1항관련)

1. 특별시·광역시

현정원에 대한 조정정원+ $(5.793702 \times \text{학교수} \times \text{증감분} \times 0.6 + 0.1919011 \times \text{학급수} \times \text{증감분} \times 0.4) \times 1.15 + 70.9 \times 2$ 과 지역교육청 증감분+ 57×4 과 지역교육청 증감분+ 40.3×2 과 지역교육청 증감분

2. 도

현정원에 대한 조정정원+ $(5.022132 \times \text{학교수} \times \text{증감분} \times 0.6 + 0.3594281 \times \text{학급수} \times \text{증감분} \times 0.4) \times 1.15 + 61.6 \times 2$ 과 지역교육청 증감분+ 51.5×4 과 지역교육청 증감분+ 31.6×2 과 지역교육청 증감분

비 고

1. 현정원에 대한 조정정원은 각각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.

가. 특별시·광역시

$$[\text{현정원} + \{1.720094 \times (\text{학급수} \div \text{학교수}) \text{의 자연로그값}\} \times \text{학교수} + 168.1659 \times 2 \text{과 지역교육청수} + 177.8311 \times 4 \text{과 지역교육청수} + 105.4566 \times 2 \text{과 지역교육청수} + 161.7123] \div 2$$

나. 도

$$[\text{현정원} + \{1.910288 \times (\text{학급수} \div \text{학교수}) \text{의 자연로그값}\} \times \text{학교수} + 123.1787 \times 2 \text{과 지역교육청수} + 49.33297 \times (2 \text{과 지역교육청수} + 4 \text{과 지역교육청수}) + 225.1432] \div 2$$

2. 학교수·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는 현정원을 조정한 연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3. 학교수·학급수 및 지역교육청 증감분은 각각 현정원을 조정한 연도에 대한 당해연도의 증감분을 말하며, 해당연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시·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(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6526, 2008.12.29)

구 분	표준정원	보정정원	비 고
충청북도교육청	2,879	2,965	